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1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 : 아수진비 · 강민정 · 강준현

김승원 · 김원이 · 도종환

송옥주・어기구・허 영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,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.

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법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리 해석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
민간부문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해, 교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원의 노동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).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가입 범위)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원
- 2.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

제5조제1항 중 "허가"를 "동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) ①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섭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

노동조합의 유지 •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

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의 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,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교원"이	제2조(정의)
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u>다만,</u>	
해고된 사람으로서 「노동조합	<u>서 삭제></u>
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82조제	
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	
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	
람은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	
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(이하	
"중앙노동위원회"라 한다)의 재	
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	
로 본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가입 범위) 노동조합에
	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
	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
	<u>1. 교원</u>
	2.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
	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
	으로 정하는 사람
제5조(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)	제5조(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)
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<u>허가</u> 가	① <u>동의</u>
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	
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	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<삭 제>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[이하 "전임자"(專任者)라 한다]은 그 기간 중 「교육공 무원법」 제44조 및 「사립학 교법 | 제59조에 따른 휴직명 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• ④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노동조합 전임자의 근 로시간 면제) ① 제5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 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 른 교원은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섭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와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건전한 노사관 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 ·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「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

제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,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